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122582, 2022가단135038(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독립당사자참가인 1. C

2. D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22가단122582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소 취하로 종료).

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재은

별지(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2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

1층 내지 7층 각 555.74㎡

옥탑 43.31㎡

지하실 40.8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6341.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6.9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918.3분의 5.54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벨지기에 부동산의 상속인 피고에게 손해행위위소를 제기한 당사자이고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은 벨지기에 부동산의 각 1/2 공유지분 소유권자들입니다.
2. 본건 제쟁물인 벨지국 북부 지방 부동산은 1991. 12. 24. 소의 E가 취득하였다가, 그가 2022. 2. 27.경 사망하였고, 등기부상 피고가 2022. 2. 27. 형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2. 5. 11. 소유권 이전등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벨지기에 부동산은 망인이 2022. 2. 27.에 사망하기 전 2016. 4. 6.에,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에게 유언 공정증서에 기재 포괄적 유증약정을 하였던 것이어서 그 소유권은 등기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고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벨지 기제 부동산 및 유언공정증서상 재산들은 취득과정에서 실제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측의 돈이 상당부분 지출되었고 그뒤에도 돈거래상 독립당사자측의 채권이 많아 포괄유증 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벨지 기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면 소의 F(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아버지)가 이를 물상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2회를 하였다가 채무자를 독립당사자 참가인 C으로 변경하였고,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이 경영중인 G와 H로 변경하였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망인의 별세전, 이진 철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유증을 하였
던 것입니다. (동 공정증서상 별지 부동산 전부는 망인의 채무와 함께 공정증서의
별지 기계 재산 전부를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이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못하여, 독립당
사자들의 부지 중 피고가 상속등기를 필한 것입니다.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는 별지기계 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지분 1/2
인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 점유중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